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14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서상열 의원이 2025년 8월 11일에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936호)과 신복자 의원이 2025년 8월 11일에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978호)을 제332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25. 9. 9)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과 상인교육에 디지털·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전통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상인 조직의 자생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전통시장 등의 디지털·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1항제6호).
-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2항).
-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명시함(안 제5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디지털·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(이하 “서울상인연합회”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서울상인연합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서울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촉진”을 “촉진, 디지털·AI 역량 강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2항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설></u>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지원사업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디지털·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② <u>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(이하 “서울상인연합회”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서울상인연합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서울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제5조(상인교육 등)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, 영업기법의 개선, 정보화 <u>촉진</u> 등에 필요한	제5조(상인교육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촉진, 디지털·AI 역</u>

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· ③ (생략)	<u>량 강화</u>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